

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·시공업 (등록·변경등록)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등록 21일 변경 14일				
신 청 인	상호(명칭)							
	성명(대표자)							
	주소		전화번호					
	사무실 소재지		전화번호					
	실험실 소재지		전화번호					
기술인력 보유현황	일련 번호	성명	생년월일	직위	등록일	기술등급 및 보유자격현황	자격증번호	입사일
	1							
	2							
	3							
	4							
	5							
시설 보유현황	일련 번호	시설명	실제 면적(㎡)	시설 주소	소유 형태			
	1							
	2							
장비 보유현황	일련 번호	장비명	규격	등록 연월일	취득일			
	1							
	2							
등록/변경내용								

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(뒤쪽)

신고인 제출서류	1.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(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) 1부 2.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.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1부) 2.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(사본 1부)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